| 투자위험등급<br>6등급[매우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미래에셋자산운용㈜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 기준일 | 2026년 11월 05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2일 |
|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br>[모집 (매출) 총액] |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년 11월 05일)

#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86487)

|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 및 채권**에 투자함으로 **신용등급하락위험, 장부가평가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자산운용 기본방침]
①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②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③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④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투자신탁 | - | 0.1 | 0.05 | - | 0.11 | 11 | 23 | 35 | 61 | 137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클래스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5.11.01~ 26.10.31 | 24.11.01~ 26.10.31 | 23.11.01~ 26.10.31 | 21.11.01~ 26.10.31 | |
| 투자신탁 | 2008.08.18 | 2.69 | 2.72 | 3.04 | 2.89 | 2.32 |
| 비교지수 |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 0.02 | 0.03 | 0.07 | 0.11 | 0.14 |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26.10.31기준)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단위: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도로 | 1988 | 팀장 | 8개 | 48,631억원 | 2.72 | 2.76 | 2.78 | 2.86 | 2년8개월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 |
|---|---|---|
| 주요투자위험 |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신용등급하락위험 |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 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장부가평가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유자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 |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시가평가 전환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안정적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의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방법 |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br>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환매방법 |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2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br>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br><br>① 판매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br>-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br>-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br>② 판매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 |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집합투자업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모집・매출총액 :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
|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2일 |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86487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해당 사항 없음.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 (판매) 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 모집(판매) 장소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미래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86487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 자 | 내 용 |
|---|---|
| 2008.08.18 | 최초 설정 |
| 2009.05.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br>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 산은 국공채 법인 MMF 투자신탁 제1호 [국공채] |
| 2009.10.19 | 집합투자규약변경(법령개정사항반영) |
| 2010.01.29 | 집합투자규약 변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변경) |
| 2010.04.2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 전: 강은규, 변경 후: 김재정) |
| 2010.11.12 | 집합투자규약 변경(임의해지 요건 변경) |
| 2012.07.2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br>변경 전: 김재정, 변경 후: 강승구 |
| 2012.09.2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br>변경 전: 강승구, 변경 후: 허승찬 |
| 2013.05.28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br>변경 전: 허승찬, 변경 후: 최진범 |
| 2013.11.11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투자운용 비중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등) |
| 2014.07.24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
| 2016.01.25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br>변경 전: 안성호, 변경 후: 강효승 |
| 2016.05.04 | -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산은자산운용㈜- > 멀티에셋자산운용㈜)<br>- 투자신탁 명칭 변경<br>(산은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 2016.07.02 |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5단계 체계 -> 6단계 체계)<br>- 위험등급 변경 : 5등급(매우 낮은 위험)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
| 2017.03.20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미래에셋펀드서비스) |
| 2017.10.23 | 운용보수 인하<br>(운용보수 0.045 → 0.035) |
| 2018.01.18 | -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인하<br>- 판매보수 인상 |

| | |
|---|---|
| | (운용보수 0.035 → 0.030, 수탁보수 0.015 -> 0.010, 판매보수 0.040 -> 0.050) |
| 2018.11.0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진범 운용역 → 이주용 운용역) |
| 2018.12.27 |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
|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 2019.12.13 |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br>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
| 2020.03.20 |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주용 운용역 → 김동현 운용역)<br>2) 부책임운용전문인력(강효승 운용역) 삭제 |
| 2020.09.18 |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br>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20.12.22 |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찬곤 운용역) 추가 |
| 2021.10.07 |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br>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고난도상품 해당 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
| 2022.03.22 |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동현 운용역 → 박찬곤 운용역)<br>2) 부책임운용전문인력(박찬곤 운용역) 삭제 |
| 2022.04.21 |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br>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 2022.10.13 |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 |
| 2023.04.13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br>(장부가평가 MMF의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기재 및 위험고지 등) |
| 2023.09.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찬곤 운용역 → 박건웅 운용역) |
| 2023.10.18 |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br>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매매회전율, 증권대차거래 등) |
| 2023.11.16 | 펀드 운용 담당부서 변경 (FI운용본부 → FI운용팀) |
| 2024.03.28 | 집합투자업자 합병(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br>투자신탁 명칭변경(현. 멀티에셋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br>☏ 1577-1640 |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 경력년수 | 이력 |
|---|---|---|---|---|
| 김도로 | 1988 | 팀장 | 2년8개월 | (14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

| 성명 | 운용현황(26.10.31기준)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단위: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김도로 | 8개 | 48,631억원 | 2.72 | 2.76 | 2.78 | 2.86 | - |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 간 |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2020.03.20 ~ 2022.03.21 | 김동현(책임) |
| 2020.12.22 ~ 2022.03.21 | 김동현(책임), 박찬곤(부책임) |
| 2022.03.22 ~ 2023.09.26 | 박찬곤(책임) |
| 2023.09.27 ~ 2024.03.27 | 박건웅(책임) |
| 2024.03.28 ~ 현재 | 김도로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채권 등 | -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2 | 양도성예금증서 | -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
| 3 | 어음 | -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
| 4 | 집합투자증권 | -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5 | 환매조건부매도 |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
| 6 | 환매조건부매수 |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 7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
| 8 | 단기대출 | -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 9 |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 10 | 지분증권인 주식 등 | -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
| 11 | 단기사채 등 | - | |
| 12 |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및 채무증서 포함) | -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br><br>-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함.<br>-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br>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br>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br>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br>-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br>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br>-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구분 | 내용 | 적용제외 |
|---|---|---|---|
| 1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2 | 동일인과의 거래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는 행위 | |
| 3 | 대여/차입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
| 4 | 환매조건부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 |
| 5 | 가중평균 잔존만기 |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 |
| 6 | 기타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br>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br>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
| 7 | 다른 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8 | 후순위채권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9 | 국채증권 |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 |
| 10 | 채무증권 투자한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 |
| 11 | 현금 등 유동자산 투자(10%) | 이 투자신탁재산의 10% 이상을 다음 항목의 자산에 운용하지 않는 행위<br>가. 현금<br>나. 국채증권<br>다. 통화안정증권<br>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br>-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 한다) ·기업어음증권<br>-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br>-전자단기사채<br>마. 환매조건부매수<br>바. 단기대출 | |

| | | | |
|---|---|---|---|
| | | 사.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12 | 동일종목 투자 | -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br>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br>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br>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함. | |
| 13 | 현금 등 유동자산 투자(30%) | 이 투자신탁재산의 30% 이상을 다음 항목의 자산에 운용하지 않는 행위<br>가. ⑩항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br>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⑩항 라목에 해당하는 것<br>다. ⑩항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 입니다.

[자산운용 기본방침]
①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②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③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④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위험관리

투자 대상에 대해 엄격히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을 제한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채권 및 어음 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의미)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합니다)이내이어야 합니다.
- 적용예외
①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②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선환매유인 관리조치(MMF내 안정적자산 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 방안)>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제1항의 안정적 자산 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 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신용등급하락위험 |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 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평가위험 |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유자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시가평가 전환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안정적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의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라 편입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환매연기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투자신탁 해지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0.10%**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등 급 | 1<br>(매우높은위험) | 2<br>(높은위험) | 3<br>(다소높은위험) | 4<br>(보통위험) | 5<br>(낮은위험) | 6<br>(매우 낮은위험) |
|---|---|---|---|---|---|---|
| 97.5% VaR | 50%초과 | 50%이하 | 30%이하 | 20%이하 | 10%이하 | 1%이하 |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0.1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1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3)-1 매입가격 적용의 예외

(3)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① 판매회사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② 판매회사는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

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 허용 | |
|---|---|---|
|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
| X | X | O |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장부가 평가에 따른 조치) |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시가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br>(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br>(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시가평가 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6)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단기대출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
| 업무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br>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br>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br>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br>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br>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br>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br>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
| 선취 판매수수료 | -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 | 환매시 |
| 전환수수료 | - | 전환시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용(연간%) | | | | | | | | |
|---|---|---|---|---|---|---|---|---|---|
|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 사무관리 회사보수 | 총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 비용 주2)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총보수 비용 (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
| 투자신탁 | 0.03 | 0.05 | 0.01 | 0.01 | 0.1 | 0.01 | 0.11 | - | 0.11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개월 후급 | | | | | 사유 발생시 |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 거래비용 | 4,515 |
| 금융비용 | -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투자신탁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1 | 23 | 35 | 61 | 137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1 | 23 | 35 | 61 | 137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1100원 | 1100원 |
| 손익 | (+)100원 | (+)100원 |
| 세금 | | (+)100원*세율(15.4%) = 15.4원 |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900원 | 900원 |
| 손익 | (-)100원 | (-)100원 |
| 세금 | |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900원 | 1100원 |
| 손익 | (-)100원 | (+)100원 |
| 세금 | | (+)100원*세율(15.4%) = 15.4원 |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1100원 | 900원 |
| 손익 | (+)100원 | (-)100원 |
| 세금 | |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감사의견 |
|---|---|
| 16기(23.08.18 ~ 24.08.17) | 적정 |
| 17기(24.08.18 ~ 25.08.17) | 적정 |
| 18기(25.08.18 ~ 26.08.17) | 적정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
|---|---|---|---|
| 항목 | 18기(26.08.17) | 17기(25.08.17) | 16기(24.08.17) |
| 운용자산 | 62,407 | 68,688 | 290,248 |
| 증권 | 41,761 | 43,106 | 163,840 |
|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46 | 82 | 30,008 |
| 기타운용자산 | 20,600 | 25,500 | 96,400 |
| 기타자산 | 6 | 7 | 277 |
| 자산총계 | 62,413 | 68,695 | 290,525 |
| 운용부채 | - | - | - |
| 기타부채 | 1,584 | 1,998 | 10,543 |
| 부채총계 | 1,584 | 1,998 | 10,543 |
| 원본 | 60,829 | 66,697 | 279,982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자본총계 | 60,829 | 66,697 | 279,982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18기(25.08.18 ~ 26.08.17) | 17기(24.08.18 ~ 25.08.17) | 16기(23.08.18 ~ 24.08.17) |
| 운용수익 | 1,653 | 3,252 | 28,751 |
| 이자수익 | 1,923 | 3,277 | 28,362 |
| 배당수익 | - | - | - |
| 매매/평가차익(손) | -270 | -27 | 388 |
| 기타수익 | - | 1 | - |
| 운용비용 | 70 | 120 | 915 |
| 관련회사보수 | 62 | 103 | 746 |
| 매매수수료 | 7 | 16 | 79 |
| 기타비용 | - | 1 | 89 |
| 당기순이익 | 1,583 | 3,131 | 27,836 |
| 매매회전율 | - | - | -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해 연도 | | | 전년도 | | |
|---|---|---|---|---|---|---|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 0 | 0 | 0 | 0 | 0 | 0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158152.055 | 0 | 0 | 46349.225 | 0 | 0 |
| 부동산 | 0 | 0 | 0 | 0 | 0 | 0 |
| 장내파생상품 | 0 | 0 | 0 | 0 | 0 | 0 |
| 장외파생상품 | 0 | 0 | 0 | 0 | 0 | 0 |
| 합계 | 3735900 | 4.514 | | 9458000 | 12.487 |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0 | 0 | 0 | 0 | 0 | 0 | - |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목 | 18기(26.08.17) | 17기(25.08.17) | 16기(24.08.17) |
| 운용자산 | 62,407 | 68,688 | 290,248 |
| 증권 | 41,761 | 43,106 | 163,840 |
| 주식 | - | - | - |
| ETF | - | - | - |
| 채권 | 31,781 | 15,158 | 64,157 |
| 매입어음 | 9,979 | 27,947 | 99,682 |
| 수익증권 | - | - | - |
| 외화유가증권 | - | -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 | - |
| ELS | - | - | - |
| ELW | - | - | - |
| DLS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부동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46 | 82 | 30,008 |
| 예금 | 46 | 82 | 8 |
| 외화예금 | - | - | - |
| CD | - | - | - |
| 정기예금 | - | - | 30,000 |
| 위탁증거금 | - | - | - |
| 청약증거금 | - | - | - |
| 기타운용자산 | 20,600 | 25,500 | 96,400 |
| 콜론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 | 20,600 | 25,500 | 96,400 |
| 기타자산 | 6 | 7 | 277 |

| | | | |
|---|---|---|---|
| 미수이자 | 6 | 7 | 277 |
| 미수배당금 | - | - |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 | - | - |
| 선물정산미수입금 | - | - | - |
| 선납(선급)원천세 | - | - | - |
| 기타 | - | - | - |
| 자산총계 | 62,413 | 68,695 | 290,525 |
| 운용부채 | - | - | - |
| 매도유가증권 | - | - | - |
| 미지급주식 | - | - | - |
| 미지급채권 | - | - | - |
| 미지급ETF | - | - |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 | - |
| 기타부채 | 1,584 | 1,998 | 10,543 |
| 미지급보수 | 15 | 18 | 67 |
| 미지급해지금 | - | - | - |
| 미지급이익분배금 | 1,567 | 1,978 | 10,472 |
| 미지급원천세 | - | - | - |
| 기타부채 | 1 | 1 | 3 |
| 부채총계 | 1,584 | 1,998 | 10,543 |
| 원본 | 60,829 | 66,697 | 279,982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감자차익/차손 | - | - | - |
| 자본총계 | 60,829 | 66,697 | 279,982 |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18기(25.08.18 ~ 26.08.17) | 17기(24.08.18 ~ 25.08.17) | 16기(23.08.18 ~ 24.08.17) |
| 운용수익 | 1,653 | 3,252 | 28,751 |
| 투자수익 | 1,923 | 3,279 | 28,363 |
| 이자수익 | 1,923 | 3,277 | 28,362 |
| 배당수익 | - | - | - |
| 기타수익 | - | 1 | - |
| 매매이익 | 23 | 39 | 602 |
| 주식매매이익 | - | - |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 | - |
| 채권매매이익 | 22 | 37 | 468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1 | 2 | 133 |
| ETF매매이익 | - | - | - |
| 수익증권매매이익 | - | - | - |
| 기타매매이익 | - | - | - |
| 매매손실 | 293 | 66 | 213 |
| 주식매매손실 | - | - |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 | - |
| 채권매매손실 | 291 | 62 | 114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1 | 4 | 99 |
| ETF매매손실 | - | - | - |
| 수익증권매매손실 | - | - | - |
| 기타매매손실 | - | - | - |
| 운용비용 | 70 | 120 | 915 |
| 위탁보수비 | 18 | 30 | 224 |
| 판매보수비 | 31 | 51 | 373 |
| 수탁보수비 | 6 | 10 | 74 |
| 사무관리보수비 | 6 | 10 | 74 |
| 자문보수비 | - | - | - |
| 매매수수료 | 7 | 16 | 79 |
| 기타비용 | - | 1 | 89 |
| 당기순이익 | 1,583 | 3,131 | 27,836 |
| 비용 | 363 | 187 | 1,129 |
| 수익 | 1,947 | 3,318 | 28,965 |
| 천좌당 순이익(원) | 25 | 30 | 37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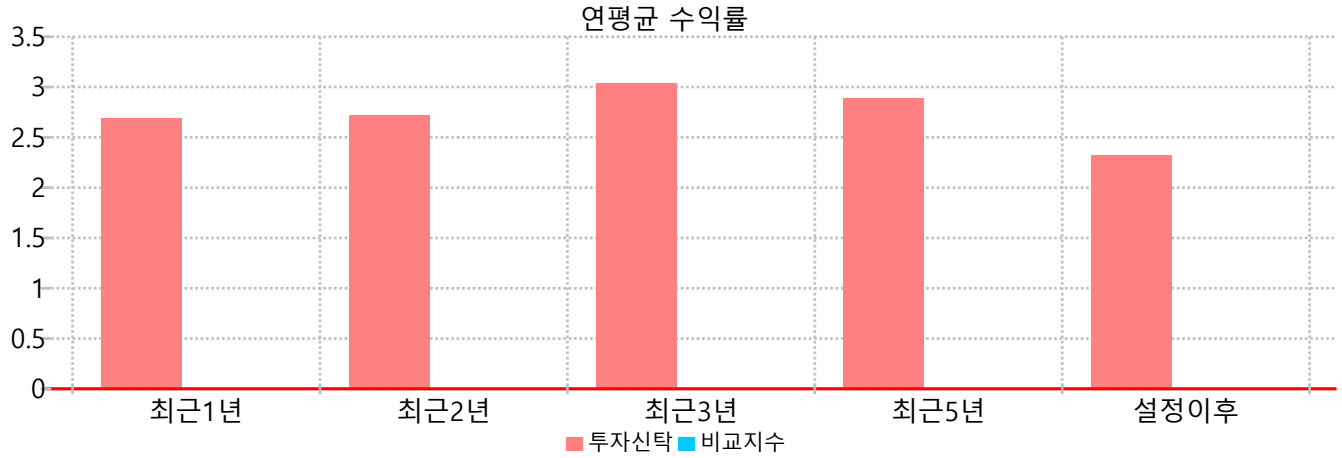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 금액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3.08.18~' 24.08.17 | 911,491 | 911,491 | 2,354,991 | 2,393,466 | 2,986,500 | 3,042,339 | 279,982 | 262,618 | 31,276 |
| '24.08.18~' 25.08.17 | 279,982 | 279,982 | 427,776 | 433,524 | 641,061 | 647,962 | 66,697 | 65,544 | 10,472 |
| '25.08.18~' 26.08.17 | 66,697 | 66,697 | 257,573 | 260,420 | 263,441 | 266,304 | 60,829 | 60,812 | 1,978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 연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이후 |
|---|---|---|---|---|---|
| (기간) | 25.11.01~ 26.10.31 | 24.11.01~ 26.10.31 | 23.11.01~ 26.10.31 | 21.11.01~ 26.10.31 | 설정일~ 26.10.31 |
| 투자신탁 | 2.69 | 2.72 | 3.04 | 2.89 | 2.32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0.02 | 0.03 | 0.07 | 0.11 | 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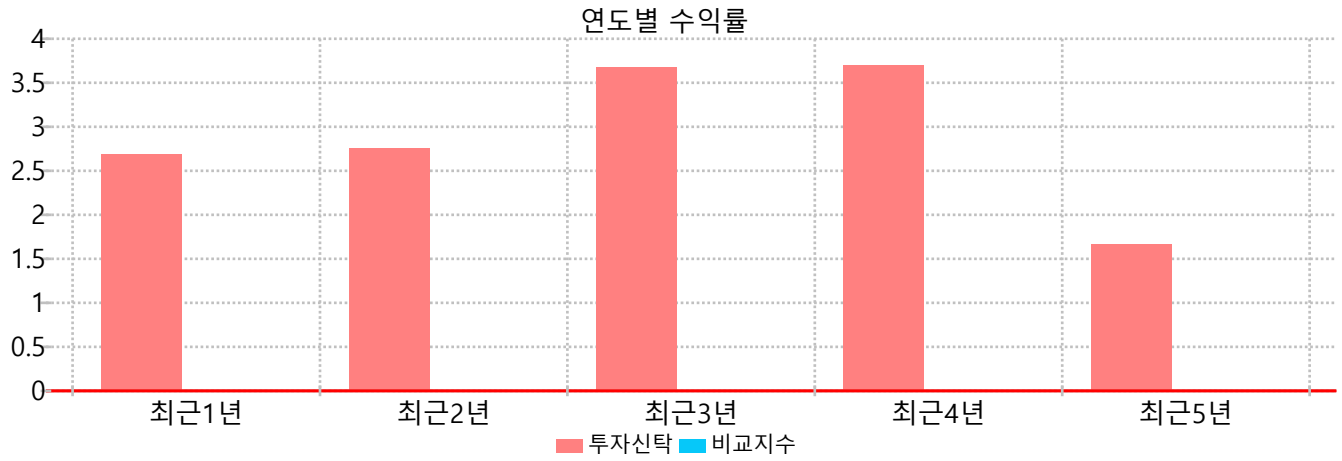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기간) | 25.11.01~ 26.10.31 | 24.11.01~ 25.10.31 | 23.11.01~ 24.10.31 | 22.11.01~ 23.10.31 | 21.11.01~ 22.10.31 |

| | | | | | |
|---|---|---|---|---|---|
| 투자신탁 | 2.69 | 2.76 | 3.67 | 3.70 | 1.66 |
| 비교지수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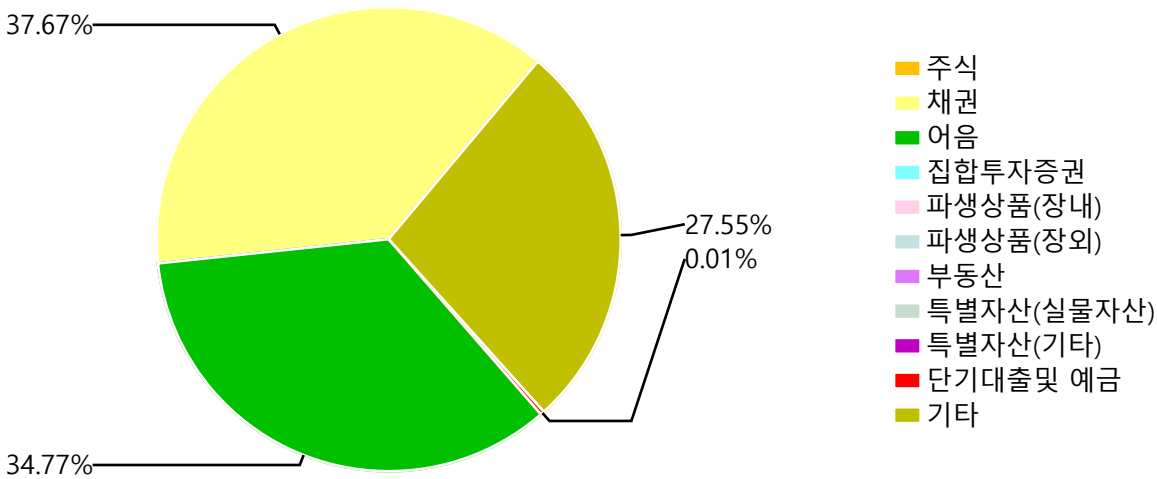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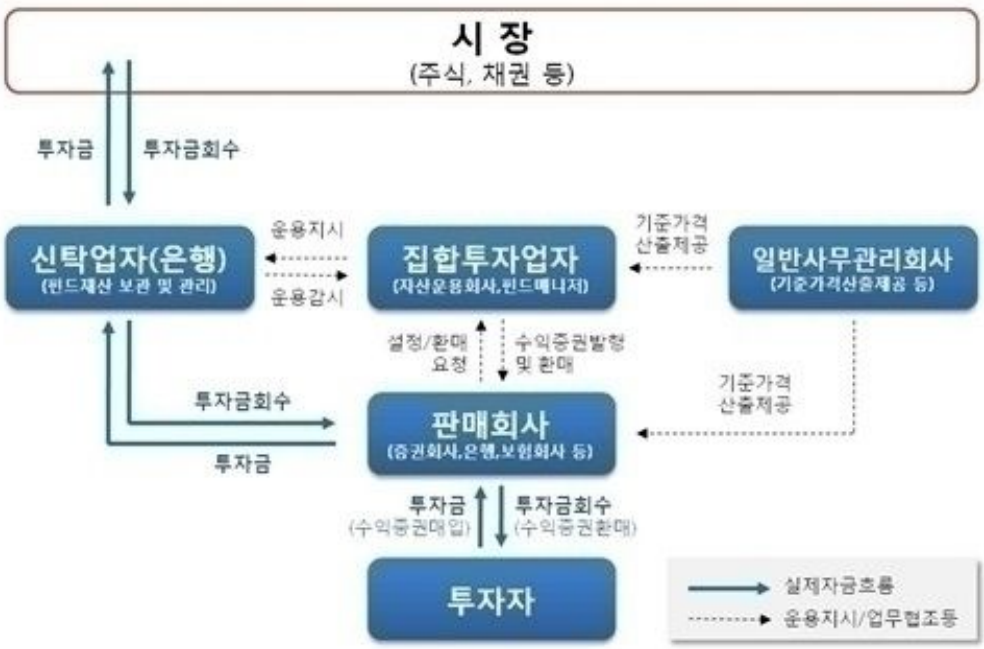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6.09.30 기준)**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한국) | - | 21,600 | 19,939 | - | - | - | - | - | - | 8 | 15,801 | 57,348 |
| | - | 37.67 | 34.77 | - | - | - | - | - | - | 0.01 | 27.55 | 100 |
| 합계 | - | 21,600 | 19,939 | - | - | - | - | - | - | 8 | 15,801 | 57,348 |
| | - | 37.67 | 34.77 | - | - | - | - | - | - | 0.01 | 27.55 | 100 |

**자산구성현황**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br>☏ 1577-1640 |
| 홈 페 이 지 주 소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자 본 총 계 | 4조 5,944억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주 요 주 주 현 황 | 박 현 주 外 |
| 회 사 연 혁 |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br>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br>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br>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

| | |
|---|---|
|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025.12.31 | 2024.12.31 | 항 목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32,510 | 92,708 | 영업수익 | 608,922 | 423,329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166,491 | 123,681 | 영업비용 | 328,796 | 282,107 |
| 유가증권 | 5,275,015 | 4,647,770 | 영업이익 | 280,126 | 141,222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61,379 | 66,887 | 지분법손익 | 591,743 | 385,105 |
| 기타자산 | 6,545 | 6,560 | 영업외수익 | 1,365 | 10,250 |
| 자산총계 | 5,741,941 | 4,937,606 | 영업외비용 | 2,744 | 2,916 |
| 예수부채 | 41,650 | 20,201 | 법인세차감전이익 | 870,489 | 533,661 |
|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 529,380 | 619,314 | 당기순이익 | 713,047 | 450,732 |
| 기타부채 | 576,498 | 423,101 | | | |
| 부채총합 | 1,147,528 | 1,062,616 | | | |
| 자본금 | 67,861 | 67,861 | | | |
| 자본잉여금 | 384,177 | 246,633 | | | |
| 기타포탈손익누계 | -25,339 | 80,811 | | | |
| 이익잉여금 | 4,167,714 | 3,479,685 | | | |
| 자본총계 | 4,594,413 | 3,874,990 | | | |

**라. 운용자산 규모 (** 2026.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증권 | | | | | 단기금융 | 파생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PEF | 투자일임기타 | 총계 |
|---|---|---|---|---|---|---|---|---|---|---|---|---|---|---|
| | 주식 | 혼합주식 | 혼합채권 | 채권 | 소계 | | | | | | | | | |
| 수탁고 | 147,594 | 6,412 | 6,793 | 46,851 | 207,650 | 8,504 | 25,485 | 11,518 | 62,638 | 12,592 | 13,887 | 817 | - | 343,091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증권금융㈜ |
| 주소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br>☏ 02-3770-8800 |
| 홈페이지 | www.ksfc.co.kr |
| 연혁 | 1955년 10월 설립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펀드파트너스㈜ |
| 주소및 연락처 |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br>☏ 02-769-7800 |
| 홈페이지 | korfp.com |
| 연혁 |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br>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br>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KIS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br>☏ 02-3215-1400 |
| 홈페이지 | www.bond.co.kr |

| | |
|---|---|
| 회사명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br>☏ 02-721-5300 |
| 홈페이지 | www.fnpricing.com |

| | |
|---|---|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br>☏ 02-2251-1300 |
| 홈페이지 | www.koreaap.com |

| | |
|---|---|
| 회사명 | 나이스피앤아이(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br>☏ 02-398-3900 |
| 홈페이지 | www.nicepni.com |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이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기 간 | 매매처명 | 거래구분 | 자산구분 | 거래금액 |
|---|---|---|---|---|
| '25.08.18~'26.08.17 | 미래에셋증권 | 위탁거래 | 채권 | 11,503,147,000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내용 |
|---|---|
| <증권의 거래> | ① 선정 시 고려사항<br>-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br>-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br>-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br>-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br><br>② 선정방법 등<br>-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
| 신탁업자 |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폐쇄형(집합투자기구) |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단위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 증권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
| 보수 |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 |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
| 환헤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